

# 2026

## 제조·수입업자 실적 제출을 위한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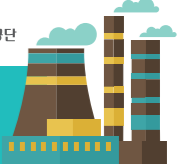
# 2026 제조·수입업자 실적 제출을 위한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 Contents

- I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 05
- II 폐기물부담금제도 부과대상 ..... 06
- III 폐기물부담금제도 부과제외대상 ..... 08
- IV 폐기물부담금 실적신고 방법 ..... 12
- V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안내 ..... 20



## I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 폐기물부담금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필요성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키는 폐기물부담금제도는 기업 스스로 제조·유통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회수·처리하도록 유도하여 폐기물관리에 따른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실시합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 폐기물부담금의 면제 및 감면

-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 기본감면**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일정 매출액·수입액 또는 일정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준으로 면제·감면합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항3호】
- 

**중소기업 창업자 감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연간 총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제4항】



### 폐기물부담금의 쓰임

폐기물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되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됩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 II 폐기물부담금제도 부과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일반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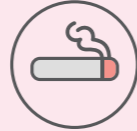
**살충제 용기**  
(유리병,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부동액**  
(자동차·건설, 농기계  
- 선박 제외)



**1회용 기저귀**  
(동물용 배변패드 포함,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제외)



**담배**  
(전자담배 포함)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플라스틱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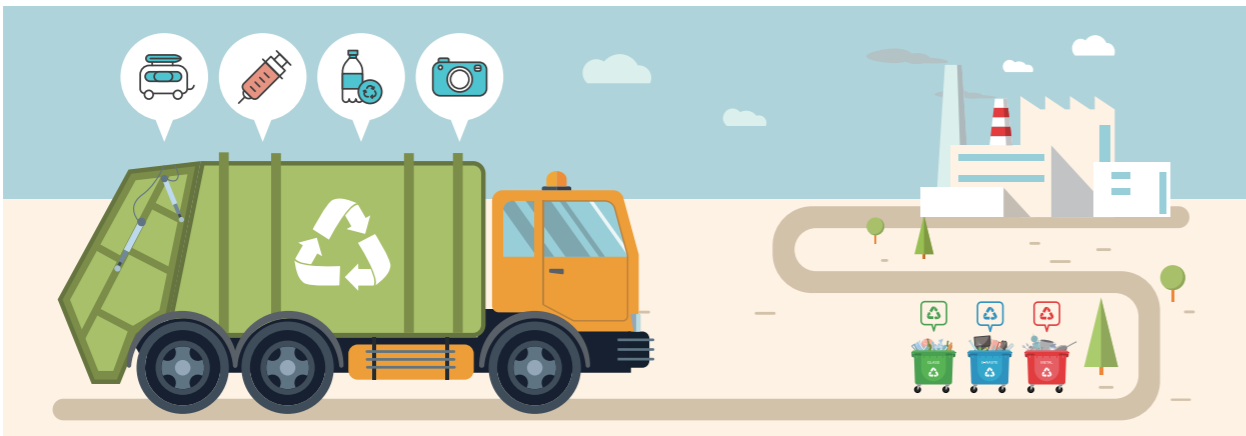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 다.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플라스틱 종류(PE, PU, PVC …)와 상관없이 가소제·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하며,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참고】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플라스틱제품 부과 관련)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3】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C139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C151
		나.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C152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기록매체 복제업 C182
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4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
6.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9
7.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가. 반도체 제조업 C261
		나. 전자 부품 제조업 C262
		다.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C263
		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C264
		마.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C265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C266
8.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C272
		다.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C273
9.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C283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C284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 C285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C289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1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C292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1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2
		다.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C303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나. 철도장비 제조업 C312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C313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9
13. 가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20
14. 기타 제품 제조업	C33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
		나. 악기 제조업 C332
		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C333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C334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C339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 III 폐기물부담금제도 부과제외대상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자도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포함)를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환경본부, 지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 ①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구분	대상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가정용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윤활유, 이 외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전자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 합성수지재질의 필름류(PVC 재질 제외)				
① 완충포장, 단열을 위한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② 세탁업용 필름류			
③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④ 1회용 비닐장갑			
⑤ 식품 포장용 랩 필름				
2.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3. 산업용 필름(PE), 교체용 정수기 필터('22년 제조·수입실적부터 적용)				
4. ('23년 제조·수입실적부터 적용)				
① 안전망(PE,PP)	② 어망	③ 로프	④ 폴리에틸렌(PE)관	⑤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⑥ 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생활용품	⑦ 파렛트	⑧ 플라스틱 운반상자	⑨ 창틀·문틀	
⑩ 바닥재(PVC)	⑪ 건축용 단열재(PS재질의 비드를 발포·성형한 제품)	⑫ 전력·통신선		
⑬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⑭ 발광다이오드(LED)조명(전구형, 직관형)			
5. 완구류('26년 제조·수입실적부터 적용)				
① 활동 완구	② 미술공예 완구	③ 퍼즐 완구	④ 기능성 완구	
⑤ 게임 완구	⑥ 승용 완구	⑦ 발사체 완구	⑧ 역할놀이 완구	
⑨ 악기 완구	⑩ 운동 완구	⑪ 유아 완구	⑫ 블록 완구	
⑬ 모형 완구	⑭ 자석 완구	⑮ 가구 완구	⑯ 교육용 완구	
⑰ 조립 완구	⑱ 기타 완구			

환경성보장제도(EcoAs) 대상	
관련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품군	대상 제품
자동차(3종)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에 한함 - 차량중량 3.5톤 이하)
일반 전기·전자제품	<p><b>[의무 대상제품]</b>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 단, 다음 각 호의 제품은 제외 ※ (근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법」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우주비행체</li> <li>「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안보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li> <li>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li> <li>「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li> <li>「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li> <li>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li> <li>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li> </ol>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말합니다 (단,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

2026년 (회계연도)	2025년 (출고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실적 신고의무 이행
	2026년 (이행년도)	환경성보장제도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 III 폐기물부담금제도 부과제외대상

## ②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 사용량 및 자발적 협약 체결한 제조·수입업자

- 플라스틱 제품의 전체 합성수지 투입량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을 제외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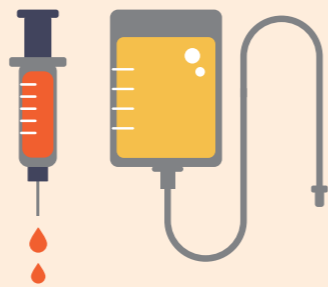
## ③ 플라스틱제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하는 제품
-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경우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2) 「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5) 「어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어선
  -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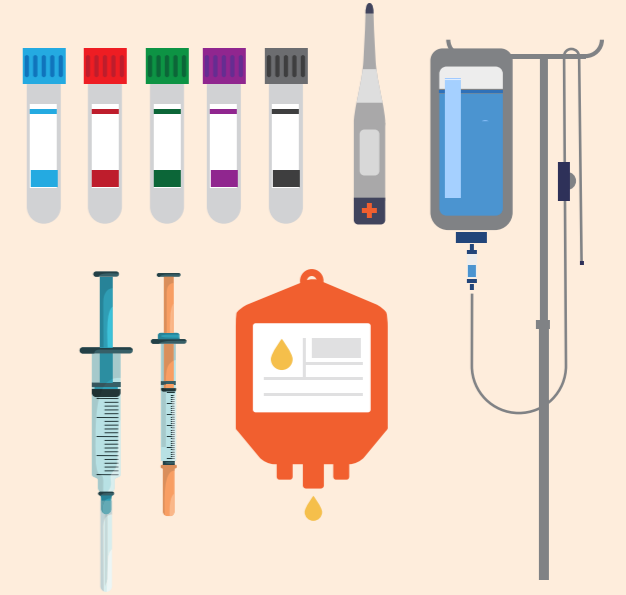
### ※ ③ - [8] 관련

####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1. 주사기(A54010.01), 유리주사기(A54010.02), 분사식주사기(A54020.01), 세정용주사기(A5404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A54070.01)
2. 수액세트(A79030.01)
3. 혈관내튜브·카테터(A57130.01)
4.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A57250.01)
5. 의약품직접주입기구(A79160.02), 이식형의약품주입기(A79150.01)
6. 진공채혈관(A66070.01)
7. 채혈세트(A66020.01)
8. 일회용내시경주사침(A31010.37), 일회용내시경투관침(A31010.39), 멸균주사침(A53010.02), 일회용담관조용침(A53010.04), 일회용동맥주사침(A53010.06), 헤파린사용독맥주사침(A53010.07), 일회용여과기부착침(A53010.09), 일회용안과용침(A53010.10), 치과용주사침(A53010.11), 척수마치용침(A53010.12), 경막투여용침(A53010.13), 일회용봉합침(A53020.02), 일회용안과용봉합침(A53020.05)



9. 일회용 채혈침(A53030.02)
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A57070.01)
11. 의료용가이드(A64050.01)
12.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A64050.02)
13.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카테터(A57030.01)
14. 흡인용튜브·카테터(A57090.01)
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A79120.01)
16. 수혈세트(A66030.01)
17. 가스튜브·카테터(A79160.07)
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
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
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 ④ 제조·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수출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
-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내지 제24조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 ⑤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EL724)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환경표지 제품이며, 그 인증기간이 실적신고년도 내에 있는 제품에 한정함

※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면제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EL724(생분해성수지제품)의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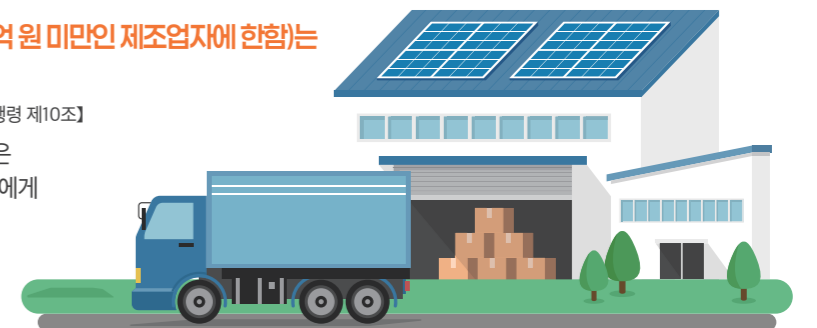
##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⑦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연년 총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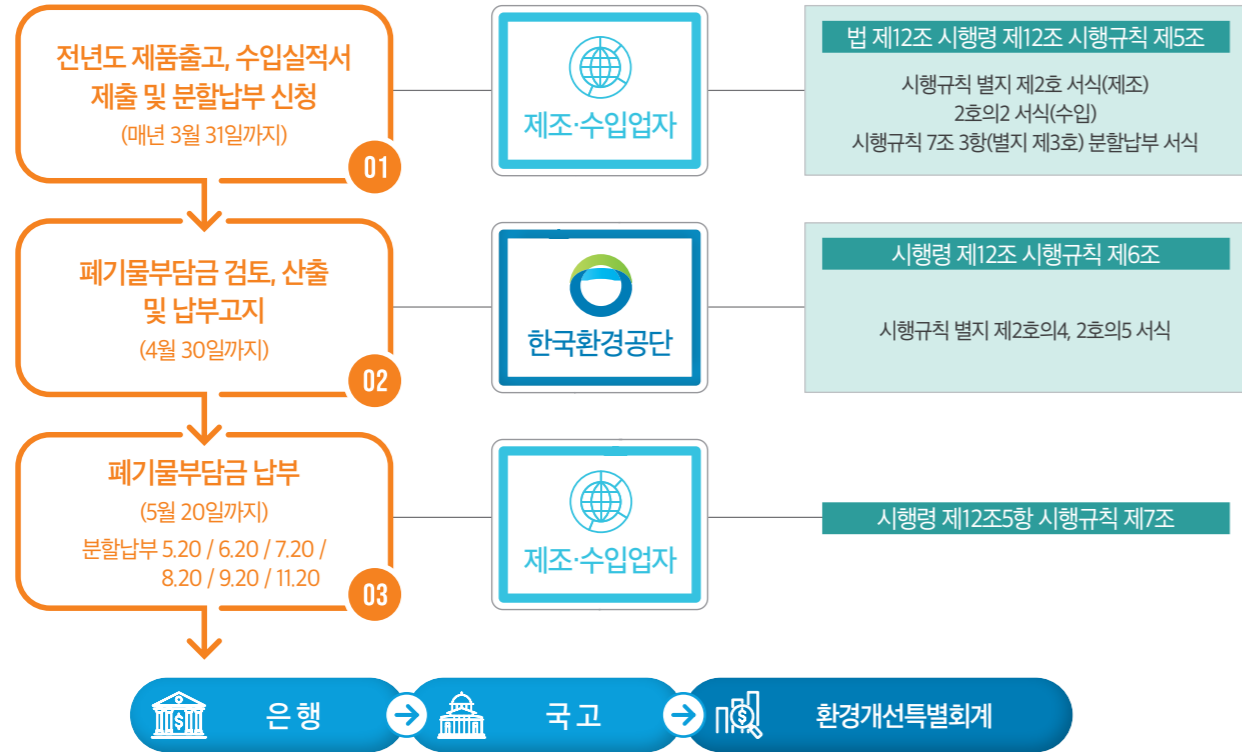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해당 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청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 결과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IV 폐기물부담금 실적신고 방법

## 업무 흐름도



##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전년도 제품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자료인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지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출고·수입실적 합산기간 : 1년 (2025. 1. 1. ~ 2025. 12. 31.)
- 출고·수입실적 제출기한 : 2026. 3. 31. 까지
- 출고·수입실적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www.budamgum.or.kr)
  - 오프라인 제출 : 우편·팩스·방문(사업장소재지 관할 공단 환경본부·지사)

###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부과

### ① 품목별 부과요율·금액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유독물 용기	가. 플라스틱 용기	500ml 이하	가. 플라스틱 용기 24.9원
		500ml 초과	30.7원
	나. 유리병	500ml 이하	나. 유리병 56.2원
		500ml 초과	84.3원
	다. 금속캔(유독물 한정)	500ml 이하	다. 금속캔 53.9원
		500ml 초과	78.2원
2. 부동액	부동액(자동차, 건설·농기계)	ℓ 당 189.8원	
3.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애견용 배변패드 포함, 의료기관 납품용 기저귀 제외)	개당 5.5원	
4. 담배	담배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 제외한다)	20개비당 24.4원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 카트리지를 말한다)	
5.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전체 중량 kg당 313원	
6. 플라스틱 제품	건축용(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일반용(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 '24년도 실적부터 "껌" 품목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

### 폐기물 부담금 산정

- 플라스틱제품 외 품목 : 2025년도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 × 부과요율·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플라스틱 제품 : {2025년도 출고·수입 제품의 플라스틱 투입량(kg) - 감면량(kg)} × 부과요율·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년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 2025년도 부담금 산정지수 : 1.3914 / 담배의 경우 : 1.1950 / 아이스팩의 경우 : 1.1265

②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지사에서는 제출한 출고·수입 실적서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에 2026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고지 합니다.

③ 납부기한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며,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4항

- 납부기한 경과 1주일 이내 : 1/100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1주일 초과 : 3/100 가산금

# IV 폐기물부담금 실적신고 방법

##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출고·수입 실적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말까지 제출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조·수입업자 중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을 연 6회에 나누어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음

- ✓ 1회차 : 5월 20일
- ✓ 2회차 : 6월 20일
- ✓ 3회차 : 7월 20일
- ✓ 4회차 : 8월 20일
- ✓ 5회차 : 9월 20일
- ✓ 6회차 : 11월 20일

※ 분할납부는 출고수입 실적서를 법정기한(매년 3월 31일)내 제출한 납부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지서 발급 후 분할 납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세부 부과기준

### 1. 반제품 아이스팩 기준중량은 동일규격의 완제품 평균중량을 적용

가. 외측 가로, 세로에 따라 부과기준값을 세분류

나. 아래 산정표에 표시되지 않은 신규 규격 신고시, 면적(가로×세로)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연번에 대한 직선보간법을 적용

<규격별 반제품 아이스팩 무게 산정표>

연번	외측 가로 (cm)	외측 세로 (cm)	면적 (cm <sup>2</sup> )	산출중량 (kg)	연번	외측 가로 (cm)	외측 세로 (cm)	면적 (cm <sup>2</sup> )	산출중량 (kg)
1	10	15	150	0.103	10	17	23	391	0.528
2	12	16	192	0.130	11	18	25	450	0.627
3	12	17	204	0.142	12	18	30	540	0.702
4	12	18	216	0.174	13	21	27	567	0.725
5	15	15	225	0.178	14	19	30	570	0.727
6	15	20	300	0.337	15	20	29	580	0.746
7	16	20	320	0.412	16	22	27	594	0.773
8	16	23	368	0.488	17	20	30	600	0.784
9	16	24	384	0.510	18	"단면적 600cm <sup>2</sup> 초과"			"0.800"

- 1) 특대형 비 표준제품(단면적 600cm<sup>2</sup> 초과)의 경우 소량 주문제작의 형태로 유통되며 주문에 따라 규격이 다양하므로 세부 규격을 규정하지 않음
- 2) 특대형 비 표준제품(단면적 600cm<sup>2</sup> 초과)의 경우 대용량 포장재(박스)에 바닥 깔개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완충과 보냉 역할을 위하여 물을 적게 투입함에 따라 사용용도 및 업계의견을 종합하여 0.8kg의 반제품 부과기준 중량 적용
- 3) 상기 표에 표기되지 않은 아이스팩 규격은 면적-중량 간 직선보간법 적용하여 중량산출

## 직선보간법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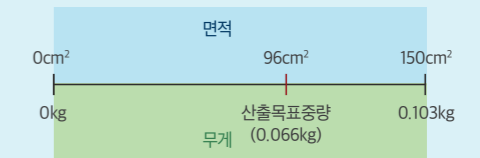
◎ 위 표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규격 신고 시, 신규 규격의 면적(가로×세로)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연번에 대한 직선보간법 적용

\* 반제품 신규규격의 중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kg 기준)

\* 신규규격 중량 = 작은연번 완제품 중량 + (중량차이) × (면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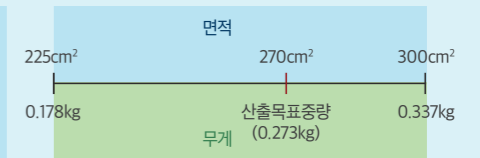
예1) 8×12(96cm<sup>2</sup>) 신규규격 신고 시

- 0cm<sup>2</sup> 와 연번1(150cm<sup>2</sup>) 간 직선보간법 적용
- 신규규격(96cm<sup>2</sup>) 중량 =  $0 + (0.103 - 0) \times \frac{96-0}{150-0} = 0.066(\text{kg})$



예2) 15×18(270cm<sup>2</sup>) 신규규격 신고 시

- 연번5(225cm<sup>2</sup>)와 연번6(300cm<sup>2</sup>)간 직선보간법 적용
- 신규규격(270cm<sup>2</sup>) 중량 =  $0.178 + (0.337 - 0.178) \times \frac{270-225}{300-225} = 0.273(\text{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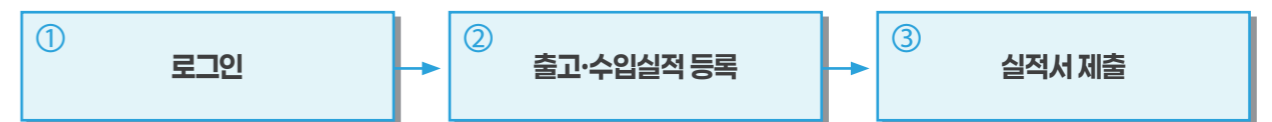


## 온라인 제출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 : [www.budamgum.or.kr](http://www.budamgum.or.kr)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순서 :



[www.budamgum.or.kr](http://www.budamgum.or.kr) 접속

'통합회원 로그인' 버튼 (우측상단)

# IV 폐기물부담금 실적신고 방법

## ① 1. 회원가입

- ①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통합회원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 ② 사용자로그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회원가입] 링크 클릭하고 '가입여부확인' 화면으로 이동
- ③ 가입여부판단을 위해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업일자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가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선택
- ④ 이용약관동의 후, 신규가입 업체면 업체정보와 사용자정보를 입력하고 기가입된 업체면 사용자정보를 입력
- ⑤ 가입에 필요한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업로드
- ⑥ 각 시스템의 환경본부(지사) 관리자의 승인 후 이용 가능

## 2.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등록

### 1)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 및 등록 (공단 전용 인증서)

- ① 상단메뉴 「사용자정보 - 인증서발급신청」에서 하단 '인증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② 신청자 구분에서 본인여부 선택 후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우측하단 '신청하기' 클릭
- ③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서류 구비 후 관리자(공단 환경본부·지사) 대면 확인

인증서 신청 제출서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서 신청서 1부 (대표자 자필서명)</li> <li>•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li> <li>•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li> <li>•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서 신청서 1부 (법인인감 날인)</li> <li>•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li> <li>• 사진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 지참)</li> <li>• 개인정보의 정보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인증서 담당자 및 대리인 각각 자필서명)</li> </ul>

※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까지 유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④ 관리자 발급 승인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상단메뉴 「사용자정보 - 인증서 관리」를 클릭
- ⑤ 「인증서 발급」 클릭하여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후 다시 「인증서 발급」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발급절차 수행

### 2) 공동인증서 등록 (소지하고 있는 경우)

- ①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상단메뉴 「사용자정보 - 인증서 관리」를 클릭
- ② 화면 우측 「인증서 등록」에서 소지하고 있는 인증서 선택하여 등록 후 재로그인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인증서 구분	범용 인증서	특수 목적용		기타
		금융권 인증서	공단발행 인증서	
법인/기업 /개인사업자용	○	○	○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폐기물부담금, EcoAS, EPR, 울바로스시스템) 단,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인증서는 등록 불가

☞ 금융권인증서의 범위 : 인터넷뱅킹용·전자세금계산서용·국세청 e-세로 인증서  
(법인·기업인증서 또는 개인사업자용 인증서만 가능)

## ② 제조·수입 실적 등록 및 물질정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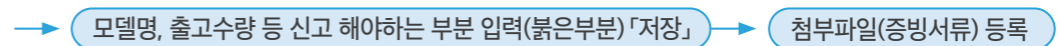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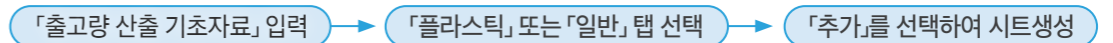
### 제조실적 등록

#### ◎ 제조업자(실적신고-제조실적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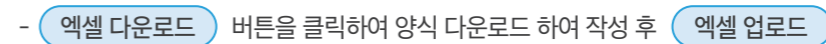
##### ① 정보조회



##### ② 수량정보 등록



※ 제조실적 등록 품목이 많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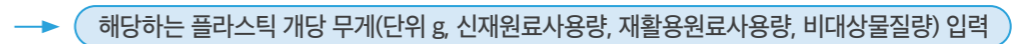
- 엑셀 양식 변경 시 엑셀 업로드 불가

※ OEM 해당 시 OEM 매입, 매도, 업체 정보 등 입력

“OEM”임을 증빙할 수 있는 파일 첨부

예) OEM계약서, 제품 사진 등 OEM매입, 매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③ 중량정보 등록(플라스틱 제품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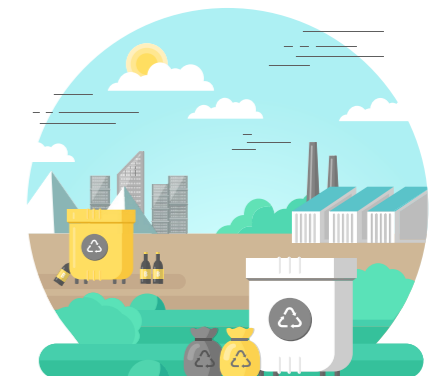
※ 해당제품에 포함된 합성수지 투입량에 대한 정보인 플라스틱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을 추가

예) 해당제품에 대한 합성수지 투입량을 측정할 시험성적서, 제조사가 제품의 정보를 증명한 서류,  
해당 제품의 분해 등을 통한 직접 측정 자료(사진 포함) 등

##### ④ 예상부담금 안내

• 대표품목 선택하고 업체정보, 실적정보, 산정내용,

분납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제출하기」 클릭



# IV 폐기물부담금 실적신고 방법

## 수입실적 등록

### 수입업자(실적신고-수입실적신고)

#### ① 정보조회(공통)

「신규작성」 → 해당하는 「수입년도」 선택

#### ② 수량정보 등록

• 일반물품(플라스틱 외 품목)

- 「신고필증확인」 단계 : 일반물품 탭 선택하여, 물품종류를 선택하고 임시저장 후 다음

- 「수량정보등록」 단계 : 실제수입수량 및 비대상수량 등 입력 후 임시저장(필요한 경우 단위 환산하여 입력)

• 플라스틱 제품

- 「신고필증확인」 단계 : 물품종류 및 순중량여부 선택

※ 순중량여부 : 순중량여부 선택 저장시, 신고필증의 순중량을 합산하여 부담금으로 산정  
비대상 또는 신재원료사용량 입력해야하는 신고필증은 순중량 미선택으로 저장

- 「수량정보등록」 단계(비대상신고) : 해당항목 체크박스 선택 후, 목록 좌측상단 일괄적용 버튼 클릭하여

비대상에 체크 및 「적용」 으로 변경하여 적용

- 「수량정보등록」 단계(함유량신고) : 실제수입수량 및 비대상수량 등 입력 후 임시저장(필요한 경우 단위 환산하여 입력)

※ 순중량 신고 시, 해당단계 생략됨

#### ③ 중량정보 등록

• 「중량정보등록」 단계(함유량 신고) : 신재원료사용량 칸에 제품 단위(개) 당, 투입 된 플라스틱 중량을

g단위로 입력, 목록 아래 파일추가 하여 증빙자료 업로드

※ 수입실적이 많을 경우 각 단계에서 엑셀다운로드 버튼으로 파일을 저장하여 작성 한 후, 엑셀업로드 가능 단, 양식 변경 금지. 숫자만 입력 요망

### ③ 실적서 제출

예상부담금 확인에서 산출된 예상부담금 내역 (분할납부조건, 감면조건, 부담금 산출내역 등) 확인 후 제출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에서 부과내역 조회 및 관리 가능)



## 온·오프라인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

### 일반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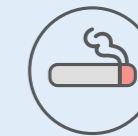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1부
- ②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1부
- ③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④ 제품수불부,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수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⑥ 기타(해당업자)
  - 담배의 소각 및 멸각에 따라 지방세 등 환급수량이 있는 경우 출고년도 표기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부한 공제·환부증명서 첨부
  - OEM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입고·납품현황 첨부(증빙자료 포함)

### 플라스틱 제품

-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1부
- ②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1부
- ③ 실적년도 총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매출액 증빙자료
  - 예) 연간 총매출액이 기재된 법정 회계장부 사본,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사 및 회계사가 발행하는 재무제표증명원, 연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 및 플라스틱의 매출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④ 제품별 플라스틱 투입량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⑤ 제품수불부, 결산보고서 등 출고·수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⑦ 기타(해당업자)
  - OEM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입고·납품현황 첨부 (증빙자료 포함)



# V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안내

## 폐기물부담금 산출

- ※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에서 출고량 입력시 해당 산출식은 자동계산 됩니다.
- ※ 오프라인 제출시 폐기물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 부담금 계산기 이용 가능

### 예시 I 제조업자



#### ● 감면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량 산정

- ① 감면 가능량 : 사용량 300톤 중 10톤
- ② 감면 가능량 : 연간 총 매출액 10억 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7.5톤
- \* (산식)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10억 원 ÷ 연간 총 매출액(원) = 300톤 × 10억 원 ÷ 400억 원 = 7.5톤

- 위 제조업자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 10억 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7.5톤 감면보다 유리한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양”을 선택하여 총 10톤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00kg - 10,000kg = 290,000kg
- 최종 폐기물부담금 산정결과 : 290,000kg × 150원 × 1.3914 = 60,525,900원

### 예시 II 수입업자



#### ● 감면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량 산정

- ① 감면 가능량 : 수입량 6톤 중 3톤
- ② 감면 가능량 : 연간 총 수입액 9만달러에 해당하는 2.7톤
- \* (산식) 연간 플라스틱 제품 수입량(kg) × 9만달러 ÷ 연간 총 수입액(달러) = 6톤 × 9만달러 ÷ 20만달러 = 2.7톤

- 위 수입업자의 경우 “연간 플라스틱 제품 수입액 2.7톤 감면보다 유리한 연간 플라스틱 제품 수입량 3톤에 해당하는 양”을 선택하여 총 3톤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00kg - 3,000kg = 3,000kg
- 최종 폐기물부담금 산정결과 : 3,000kg × 150원 × 1.3914 = 626,130원

## 폐기물부담금 납부방법

### 폐기물부담금 전자납부 이용방법

#### 한국환경공단 계좌로는 납입 불가(가상계좌 및 공단체좌 등 없음)

####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필요)

- ①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회원으로 가입
- ② 메뉴선택 : 지방세·세외수입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③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진행[계좌/카드 결제 선택]
- ④ 전자납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카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납부금액의 약 1%)  
※ 신용카드 납부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외 신용카드 납부 불가

#### ▶▶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서비스

- ① 인터넷뱅킹 접속
- ② 공과금 납부 → 국세 → 기금/국고 선택조회 후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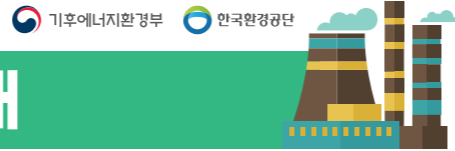
은행명	메뉴선택	은행명	메뉴선택
국민은행	공과금 ▶ 기금/국고 ▶ 기금/국고납부	하나은행	공과금 ▶ 국세/관세 ▶ 기금/기타국고
기업은행	공과금 ▶ 국세/관세/법칙금 ▶ 기금/기타국고	신한은행	공과금 ▶ 국세/관세 ▶ 항만수수료/기금/기타국고
농협	공과금 ▶ 국세 ▶ 기금/국고납부	우리은행	공과금 ▶ 국고/관세 ▶ 기금/기타국고
우체국 방문시	우체국 수납창구를 방문하시면 별도 고지서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가능 ※ 납부영수증은 우체국에서 발행		

#### ● 가산금(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방법)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1%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추가고지서발급 없음)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고지서 사용불가)

●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 V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안내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한 안내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단 관할 환경본부, 지사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서류	이의신청 처리기한	이의신청시 유의 사항
①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서 1부 ②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서류	공단 관할 환경본부(지사)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① 이의신청은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신청 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②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확정에 따라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반환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①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 ②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 ③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장부의 기록보존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기록보존장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보존기한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5년간
미 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서식자료는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환경본부(지사) 연락처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6층	(제조) 031-590-0634,5 (수입) 031-590-0636,7 (자발) 031-590-0633	031-590-0649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평택,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여주, 양평, 하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07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부담금관리부	(제조·수입) 02-3153-0540 (자발) 02-3153-0557, 0546	02-3153-0549	서울, 인천, 경기도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연천, 파주, 양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4663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제조) 051-366-3745, 3750 (수입) 051-366-3751, 3744 (자발) 051-366-3750	051-366-3749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4218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별관3층)	(제조) 053-580-7531, 7536 (수입) 053-580-7535 (자발) 053-580-7531	0303-0944-7599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3층	042-939-2322, 2323, 2326	042-939-2320	대전, 충남, 세종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2832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향로150번길 73 KT 6층	043-219-6409, 6446	043-215-0169	충북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062-949-0315, 0316	062-959-6926	광주, 전남
제주지사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03호	064-723-6542	064-721-5564	제주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24436)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8층	033-240-9541	033-240-9546	강원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5459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063-279-0831	063-273-6050	전북

<http://budamgum.or.kr>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